

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22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5 . 29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내용삭제.
- 수입증지는 지정된 판매인에게 증지액면 정액(액면가액의 95%) 으로 판매한후 판매인의 책임으로 관리되고 있음.
- 판매인에게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게 하고, 장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수입증지판매인의 장부 비치 및 장부 검사 조항 삭제
(개정 안 제27조)
- 별지제6호 서식 삭제

개정근거

-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
- 「조례·규칙·규정」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제2차 정비계획 【'99. 5. 8】

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를 삭제한다.

별지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7조(장부 비치 및 검사)①판매인은 별지 제6호의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군수가 필요한 때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별지제6호 서식(수입증지수불부)</p>	<p>제27조 < 삭제 ></p> <p>별지제6호 서식(수입증지수불부) < 삭제 ></p>